

홍보 대행 계약서

의뢰자 주식회사 00(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라이징팝스(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00" 언론 홍보와 관련하여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관련한 언론기사를 통한 홍보 업무(이하 "언론 홍보")를 "을"이 대행하는 것과 관련된 권리의무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 정의 】

1.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언론 홍보'라 함은 언론 매체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으로 보도자료 아이템 발굴, 기획, 작성, 배포 및 피칭 등 언론을 통한 '갑'의 브랜딩과 인지도 확산, 회원 유입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 ② '스트레이트 기사'란 짧은 길이의 기사로 일반적인 정보에 주목한 기사를 말하며 '스트레이트 릴리즈'를 통해 다수의 매체와 기자들에게 배포된다.
 - ③ '기획 기사'란 단발성 기사와 달리 심층 취재가 필요한 기사로 '갑'에 대한 독자의 흥미를 끄는 소재의 심층적 기사를 말한다.
2.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제 1항에서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해석은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

제 3 조【 홍보방법 및 업무 범위 】

1. "을"은 "갑"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언론 홍보를 보도자료 12회 배포 기준 2,160만원(부가세 별도)으로 진행한다. 진행되는 기사의 종류는 스트레이트, 기획기사, 칼럼/기고, 인터뷰 등 무관하다.
2. "을"은 진행 과정에서 방송/신문/매거진 등 언론 대응도 진행한다. 이러한 후속 취재는 배포 건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제 3 조【 책임과 의무 】

1. "갑"은 "을"이 본 계약의 업무 수행에 있어 진행이 원활하도록 제공가능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한다.

2. "을"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 "갑"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사전에 기획서를 작성하고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갑"이 수정사항을 요구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다만, "을"은 당해 수정이 홍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갑"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갑"은 "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보도자료를 검토하고, '을'의 의견을 반영해 게재 기사의 종류 및 매체 등을 선정한다. 단, 보도자료 수정 및 재 작성 요청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다.
4. "을"은 지면/매체 선정 등 언론 홍보 진행과 관련해 모두 "갑"과의 사전 상호 합의 후 진행한다.
5. "을"은 업무에 관해서 "갑"이 제공한 서류, 도면, 정보, 데이터 기타 모든 자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보관·관리하고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복제, 반출 혹은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 5 조【홍보업무 진행 방식】

1. "을"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홍보업무를 진행한다.
 - ① "갑"과 "을"은 양사 간 아이템을 발굴 및 제안한다.
 - ② "갑"의 아이템 승인여부에 따라 "을"은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아이템을 재 제안한다.
 - I. "갑"이 아이템 승인 시 보도자료 작성
 - II. "갑"이 아이템을 승인하지지 않을 시 아이템 재 제안
 - ③ 아이템 확정 후 "을"은 보도자료 작성하고 이에 대한 "갑"의 의견을 반영한다.
 - ④ "갑"의 보도자료 승인여부에 따라 "을"은 배포일자를 합의한다.
 - I. "갑"이 보도자료 승인 시 배포일자 상호 합의
 - II. "갑"이 보도자료 승인하지지 않을 시 보도자료 재 작성
 - ⑤ "을"은 합의된 배포일에 보도자료 배포(또는 피칭)한다.
 - ⑥ "을"은 보도자료 배포(또는 피칭) 후 게재된 기사를 정리하고 메일을 통해 "갑"에게 보고한다.
2. 기사의 수정 또는 삭제의 경우에는 "갑"은 "을"을 통해서만 해야 한다. "을"의 동의없이 "갑"이 직접 언론사에 기사 수정 또는 삭제 요청 시 "을"을 갑에게 계약금의 2.5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기사 수정 또는 삭제 시 협찬비, 광고비 등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을"은 "갑"에게 보고하고, 이 때 발생하는 용역비와 별도로 한다.
 - ②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기사 수정 또는 삭제가 될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1회 용역비에 해당하는 금액(180만 원)을 업무 추진비로써 용역비와 별도로 청구한다.

제 6조【홍보에 따른 비용 정산】

1. 계약 기간은 보도자료 첫 배포일(2019년 3월 26일)로부터 180일(2019년 9월 21일) 간이다. 180일 이전에 보도자료 12회차 배포가 모두 소진되더라도 "을"은 2019년 9월 21일까지는 추가 비용 없이 언론 대응을 지속한다.
2. "갑"은 부가세를 포함한 2,376만원을 "을"이 보도자료 12회차 배포한 일자로부터 최대 30일 이내 전액 지급한다. "을"은 보도자료 12회차 배포한 일자로부터 최대 5일 이내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청구 발행한다. 지급 시기는 상호 구두로 협의 가능하다.

제 7 조【양도 및 재위탁의 금지】

1. "을"은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지 않고 본 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해서는 안 된다.
2.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를 얻지 않고 본 계약이 기초하여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불가항력】

1.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본 계약상 업무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2. 위 제 1항의 경우 양 당사자는 기와료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미이행부분에 대하여 상호 권리 및 책임을 주장하지 아니하며, 즉시 손해의 축소 등을 위한 조치에 착수하는 외에 계약기간 연장 등 필요한 합의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 9 조【손해배상】

1. "갑"과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후 업무진행 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상대방의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0 조【비밀유지】

1.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으로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그 사항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상대방이 요구하는 비밀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이는 본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유효하다.

2. 당사자 일방이 전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 피해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당사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을"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접근을 허가한 범위 외의 자료나 정보에 접근하지 않는다.

제 13 조【 해 지 】

1.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 상대방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사업의 불투명 사유가 발생할 시
 - ② 파산, 회사정리, 화의신청 등의 사업 불가능 사유가 발생할 시
2. 본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과 '을'은 타방 당사자와 협의 후 이메일을 포함한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 일반사항 】

1. 본 계약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에 의해 정해지지 않거나 해석상의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법규 및 상관례에 따라 서면으로 합의한다.
3. 계약 기간 중 제 13조를 제외한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 될 수 있으며 서면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4.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서명 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